

유의사항 및 구비서류

구분	내용	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회원번호 기재 -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회원번호(약정서별 일련번호)를 모두 기재하십시오. ▶ 수급권자 지정 - 수급권자 지정은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, 형제자매(목돈급여의 경우 직계존속 가능)에 한합니다. -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 지정 · 회원 내방 시 : 지정·변경신청서 1부, 신분증 1부 지참 · 우편발송 시 : 관련 구비서류 모두 첨부 - 신규 수급권자 지정 시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 -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 ▶ 가입구좌 통합 - 가입구좌 통합은 가입 경과기간(1년 미만 건별, 1년 이상 건별, 비과세 1년 미만 건별, 비과세 1년 이상 건별)에 따라 통합됨에 유의하세요. ▶ 급여금 수령방법 변경 - 급여금 수령사항 변경 이후 원금을 해약할 때 해약수수료는 최초 가입일자 기준으로 1년 미만, 1년 이상을 적용합니다. ▶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 -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은 1회차 급여금 지급 이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 ▶ 비과세종합저축 전환신청 - 전 금융기관의 본인 가입한도를 확인하고, 전환신청 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※ 비과세종합저축은 2019년까지 매년 가입연령 1세씩 상향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▶ 목돈급여 재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재가입 일자 기준으로 차등 지급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9 1120 1433 1238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납입 경과기간</th> <th>해약급여금</th> <th>납입 경과기간</th> <th>해약급여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90일 미만</td> <td>부가금의 50%</td> <td>90일 이상 ~ 180일 미만</td> <td>부가금의 80%</td> </tr> <tr> <td>180일 이상</td> <td>부가금의 9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90일 미만	부가금의 50%	90일 이상 ~ 180일 미만	부가금의 80%	180일 이상	부가금의 90%	-	-
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									
90일 미만	부가금의 50%	90일 이상 ~ 180일 미만	부가금의 80%										
180일 이상	부가금의 90%	-	-										
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급권자 지정 시 ▶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1부 - 본인 내방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으로 대체 ▶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형제자매 지정 시 제적등본 1부) 1부 ■ 가입구좌 통합 시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■ 급여금 수령방법 및 수령일자,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 시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■ 비과세종합저축 전환 신청 시(대상별 해당서류 첨부) ▶ 만 63세이상(2017년 가입 기준)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▶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사본 1부 ▶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사본 1부 - 보존번호 앞자리 21, 23, 35, 51, 59, 61, 65, 71, 81, 97만 해당 ▶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: 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, 독립유공자확인원,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사본 1부 ▶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증,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사본 1부 ▶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,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사본 1부 ▶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: 5·18민주유공자증, 5·18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사본 1부 ■ 목돈급여 재가입(예탁형) 및 급여금(부가금) 수령계좌 변경시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▶ 은행통장 사본 1부 												

지정·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